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3
----------	-----

제출년월일 '99.11

제 출 자 파주시장

☐ 제안이유

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방문화예술의 적극적인 육성보급을 위하여 파주시어머니합창단의 제명변경으로 만20세이상 45세미만의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파주시 어머니합창단을 파주시여성합창단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만20세 이상 45세미만의 여성에게 기회부여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를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
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파주시어머니합창단”을 “파주시여성합창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파주시 <u>어머니합창단</u>(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u>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u> 제1조(목적) ----- -----<u>파주시</u> <u>여성합창단</u>----- ----- -----